

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

- ◆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할 경우 **각 항목별 적용기한에 따라 인정함**

□ 간접실습 및 실습지도 인원

-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**80시간(2주)**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**직접실습**으로 이수
- 다만, 나머지 **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**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**간접실습***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

※ 간접실습: 특강·모의수업, 온라인 수업발표·피드백, 수업동영상 참관, 과제 등 (교육부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, 324.)

구분	현행 규정	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
20.1.1. 현재 재 학생	▪ 120시간 이상	▪ 직접실습 80시간 + 간접실습 40시간 * (대상자) 2020.1.1.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¹⁾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
20.1.1. 이후 신입생	▪ 160시간 이상	▪ 직접실습 80시간 + 간접실습 80시간
방식	▪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	▪ (직접실습) 2주 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▪ (간접실습)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

- (지도인원)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
- (적용대상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**2022학년도 2학기에 2) 학점 부여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**
- (실습시간) **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³⁾**로 실습을 진행해야 함
- ※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

1)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[별표1]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

2) 대학,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2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(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. 12. 31. 기준)

3) 「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9조

□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운영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
- (실시기준)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실시
 -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(주1회 초과할 수 없음)
 - 「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」에 따라 기존 허용하던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 2022년 2학기부터 4) 허용 폐지

□ 교육기관 행정사항

-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(학점인정기관 포함)은 금번 대책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붙임 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하도록 수강생에게 안내
 - ※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(3주 120시간 또는 4주 160시간)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
-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「기관실습 실시기관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선정된 곳에서만 기관실습이 가능
- 교육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
 - ※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규모를 고려하고, 코로나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동시 실습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것

4) 대학,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1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(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. 6. 30. 기준)